

제26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2.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2월 20일
수석전문위원 정 우 속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6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2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2월 17일

2. 제안이유

- 관내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조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운영
- 위탁근거: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 15조
- 위탁기간: 3년(2020. 3. 1. ~ 2023. 2. 28.)

나. 추진일정

- 2020. 1월 13일 ~ 23일: 수탁자 모집 공고
- 2020. 1월 29일 ~ 30일: 수탁자 신청서 제출
- 2020. 2월 5일 ~ 6일: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정량적 평가)
- 2020. 2월 11일: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개최(정성적 평가)
- 2020. 2월 21일: 동물보호센터 지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조례」 제8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운영비 연74,700천원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단속, 보호, 치료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사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현재 공개모집에 의해 신청된 수탁자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있어서 인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물보호법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